

무엇이든 물어보세요~!

Question 국제특허출원 시 특허 이외의 권리보호를 요하는 출원인 경우 처리방법은 어떻게 됩니까?

Answer

- 지정국 또는 선택국이 특허 이외에 발명자증, 실용증, 실용신안, 추가특허, 추가발명자증 또는 추가실용증을 부여하는 것을 국내법령에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은 해당 지정국 또는 해당 선택국에 관한 한 국제특허출원이 특허가 아니고 발명자증, 실용증 또는 실용신안을 요구하는 출원이라는 것, 또는 국제출원이 추가특허, 추가발명자증 또는 추가실용증을 요구하는 출원이라는 것을 출원서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.

Question 국제특허출원 시 지정국인 우리나라에 특허로만 권리보호가 표시되었다면 국내에 실용신안으로 출원할 수 없습니까?

Answer

- 국제특허출원을 한 경우 우리나라의 국내단계 진입 시 특허로 국내단계를 진입한 경우에는, 국내법령에 따라 변경출원 제도를 활용하여 실용신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.(단, 2004. 1. 1 이후 국제출원한 경우 지정국의 국내단계진입 시 보호권리를 후 선택 가능함)

Question 우리나라를 지정국으로 하는 국제특허출원의 국내단계 진입 시 우선권주장 서류의 번역문은 언제까지 제출해야 합니까?

Answer

- 2006년 1월 1일 이후에는 특허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하여 “우선권증명 서류의 번역문”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.
- 차후,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 명의로 기간을 정하여 번역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Question PCT 국제출원 수수료는 얼마입니까?

Answer

- PCT 국제출원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. (2008. 1. 1 기준)
 - 국제료
 - 기본료 : 출원서류 30매까지 1,099,000원, 30매 초과 시 1매당 12,000원
 - 조사료
 - 한국 : 225,000원
 - 일본 : 778,000원
 - 오스트리아 : 259,000원
 - 호주 : 1,280,000원
- ※ 추가수수료는 국제조사기관별로 차이가 있으며, 한국 특허청에 있어서 추가수수료는 1 발명 당 225,000원입니다.
 - 송달료: 45,000원
- ※ PCT-SAFE를 이용하여 EASY 형식에 따라 작성된 출원서와 FD를 제출하면 79,000원을 온라인 및 CD-R로 제출 시 236,000원을 기본료에서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.
- ※ 납부방법 및 유의사항
 - 국제출원 수수료는 출원서 접수 후 1월 이내에 수수료납부서를 제출한 후 납부해야 합니다.
 - 모든 PCT국제출원 관련수수료의 납부는 국제출원서의 접수번호가 아니라 해당서류(예 : 수수료납부서)를 제출하고 부여받은 각각의 접수번호를 납부자 번호로 하여 익일까지 국고수납 은행에 납부하면 됩니다. (익일까지 미납부시 새로운 납부자번호를 부여 받아야함.)
- ※ 국제출원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PCT 홈페이지 “www.pct.go.kr”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